즉시접수	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_	, 0 _	= 0 (J - L	- 0		
접	수	제	년	월	일 호	처	리 인	Цo	기관 회	ţ인		각종 통지
	<u>'</u>					<u>'</u>	부동	산의 표	돈시			
		.과 그		일			년	월	일	설정기	계약	
등		의 목					저당권	<u> </u> 설정				
		최 고				금			원			
채 설		무 할 지	자 브									
(包	정	월 시	正									
구분		성 (상호	다. 명경		1		민등록]용등록			주	소 (: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농 어 촌 특 별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	액	금					원	
국민주택채권발행번	호							
	등기	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	번호		E	미밀번호	-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	번호		E	미밀번호	-	
	첨	부	서	면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	· 주민	등록표	초본(또는 등	등본)		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위임	장				통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	인서	통	\\ \(\) \[\]	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	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증	통						
・등기필증		통						
0 1 2 0								
		년	월	일				
위 신청인				(1)	(전화:)		
11 2 6 2				(<u>)</u>	(전화 :)		
				9	\ <u>_</u>	,		
(또는)위 대리	인				(전화:)	
ગ્રો મો	법원				.7]	중		
시방				7	5			

- 신청서 작성요렁 -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런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년	월	일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접 	수	제		호	처 리	인		

①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

대 300m²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m² 2층 100m²

		0		상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7년 !	5월 2	5일 설정	계약	
3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심	설정			
4	채 권 최 고 액	금 100,00	0,000	원		
(5)	채 무 자	이대백 시	 울특별	시 서초구	서초대로8	8길 10(서초동)
6	설 정 할 지 분					
7						
구분	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 ¹ (등기용등록		주	소 (소	채 지)
응 기 의 자	이 대 백	700101-123	34567	서울특별시 10(서초동)	서초구	서초대로88길
9 등 기권 리자	김 갑 동	801231-123	34567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길 96(다동)



● 등록면 허세			200,000원				
① 지 방 교 육 세	=======================================	<u>.</u> 1	40,000 원				
♠ 상 한 후 별 세	=======================================	1. 1	원				
① 세 액 합 계		금 240,000원					
		1 .	30,000원				
(2) 등 기 신 청 수 수 료	납부번호	: 12-12-123456	678-0				
	일괄납부	: 건	원				
③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u>-</u>	금 1,000,000원					
④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1234-12-123	34-1234				
	🕠 등기의무자의	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2006-00	2095				
성명(명칭)	일련	l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A77C-L0	LO71-35J5 40-4636					
부동산고유번호		1101-2016-001234					
성명(명칭)	일련	l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QWER-A	S12-ZXC1	40-2345				
	<u>16</u> 첨 부	서 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통	·주민등록표초	본 1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	서 1 통	·위임장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획	확인서 1 통	〈기 타〉					
·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시	사실확인서 또는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급증 1 통						
· 등기필증							
0 / 1 2 0	O						
	2017년 5	5월 26 일					
⑦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010-1234-5678)				
1	이 대 김 갑		: 010-1234-5678) : 010-5678-1234)				
	김 갑						
• ,	김 갑		: 010-5678-1234)				

- 신청서 작성요령 -

등기국 귀중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서울중앙 지방법원

삭1행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1행



등기신청안내서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 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근저당권설정자 즉, 소유자(등기의무자)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창극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간이나 신청인간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륵 사용하고, 벽지륵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격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토지(임야)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순으로 기재하고, 건물은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종류, 면적 순으로 기재합니다.

② 둥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둥기의 목적란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채권최고액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 으로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란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⑥ 설정할 지분란

근저당권을 소유권 등의 일부지분에 설정할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번○○○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⑦ 공란에 기재할 사항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존속기간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다른 약정(민법 제358조 단서)을 한 경우 그약정사항을 이 란에 기재합니다.

⑧ 등기의무자란

근저당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 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⑨ 둥기권리자란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 재하지 않습니다.

①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② 등기신청수수료란

⑦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④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 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 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 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란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란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②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 지서'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등 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다만,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①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교부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16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① 신청인등란

②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 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 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구·군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



기명의인이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③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기 타>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의 규칙/예규/선례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568호』및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5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근저당권설 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